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이원형 의원(1명)
찬 성 자: 김지향,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신복자, 아이수루,
, 유정희, 이상욱, 이숙자,
임춘대, 정준호, 홍국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23.3.27.)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p> <p>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p> <p><신 설></p>	<p>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p>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